

일본 개정 경품고시법의 개요와 취지

부당표시 등의 경품표시법 위반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후 위반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내에서 법준수 체제를 정비시키는 등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하고(「동 행위가 다시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해당), 또한 이러한 재발방지책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행정당국이 조사하기 위해 각종 사후보고를 요구하는 것(「그 외 필요한 사항」에 해당)이 중요하다.

I. 서론 ●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경품표시법에 의한 집행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156회 국회에서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함)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법은 2003년 6월 23일부터(단, 제4조의 개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II. 개정법의 개요 ●

1. 상품 및 역무의 내용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표시의 규제(제4조 관련)

1) 개정의 개요

경품표시법은 상품 및 역무의 품질, 규격, 기타 내용에 있어서 실제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개정전 제4조제1호)를 부당표시로서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우량오인표시의 금지는 금번 개정에 의해 「일반소비자에 대해 실제 물건보다도 현저히 우량하다고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당해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도 눈에 띄게 우량하다고 표시함으로써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표시」(개정후 제4조제1항제1호)로 개정되었으나, 일반소비자에 대해 실제 물건보다도 현저히 우량하다고 보이는 표시가 행해지면 일반소비자는 상품 또는 역무의 내용의 우량성에 대해 잘못 인

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표시는 개정전 제4조제1호와 동일하게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표시를 증명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역무 내용의 현저한 우량성을 나타내는 표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표시를 부당표시로 보는 제4조제2항이 신설되었다. 즉, 공정취인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 표시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표시를 한 사업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 당해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 표시를 증명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표시를 동 호에 해당하는 부당표시로 보는 것이다.

2) 개정의 취지

근래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상품과 서비스의 복잡화, 고도화에 따라 효과·성능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음을 강조한 표시가 많아져 가고 있다. 개정전의 경품표시법에는 그와 같은 표시가 부당표시로 의심되는 경우에 공정취인위원회가 당해 표시를 부당표시라고 인정해서 위반행위의 금지 등의 행정처분(배제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당해 표시를 하는 사업자가 표시된 효과·성능을 증명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표시한 그대로의 효과·성능이 없음을 공정취인위원회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관에 의한 실증시험, 전문가에 의한 감정 등이 필요하고, 그 조사가 장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도 부당표시로 의심되는 상품 등이 계속해서 판매되어 소비자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제4조제1호에 관한 개정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이 합리적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표시한 그대로의 내용 여부에 관한 입증의 필요도 없이 즉시 부당표시로 본다라는 규정이다.

3) 유의점

경품고시법상 시·도·지·사는 경품표시법에 위반하는 부당표시 등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 위반행위를 중지할 것 등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도입된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정취인위원회만이 운용주체가 된다.

즉, 동 제4조제2항에 따라서 실제로 공정취인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동 항의 시행기일인 2003년 11월

23일 이후이다(개정법 부칙 제1조 단서). 또한, 경과조치의 결정에 의해 2003년 11월 23일 전에 한 표시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개정법 부칙 제2조).

2. 시·도·지·사에 의한 집행력의 강화

1) 시·도·지·사에 의한 지시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제9조의 2 관계)

① 개정의 개요

시·도·지·사가 지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반행위가 다시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과 아울러(제9조의2 전단) 지시는 위반행위가 이미 없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하다(제9조의2 후단).

② 개정의 취지

시·도·지·사에 의한 지시 규정은 1972년의 경품표시법 개정시에 도입된 것이나 그 취지는 현존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시·도·지·사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시할 수 없으며, 또한 지시 가능한 사항이 현존하는 위반행위를 중지시키는 것 및 공시를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 공정취인위원회가 행하는 처분인 배제명령에 대해서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제6조제1항 후단), 위반행위의 금지 및 공시 외 「동 행위가 다시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동 항 전단).

부당표시 등의 경품표시법 위반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후 위반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내에서 법준수 체제를 정비시키는 등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하고(「동 행위가 다시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해당), 또한 이러한 재발방지책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행정당국이 조사하기 위해 각종 사후보고를 요구하는 것(「그 외 필요한 사항」에 해당)이 중요하다. 또한 시·도·지·사가 지시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명을 포함해서 공표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기대되지만 사업자가 위반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행위를 중지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시·공표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때문에 시·도·지·사에 의한 경품표시법의 운용이 한층 활발해지고 실효성의 강화가 도모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을 공정취인위원회의 배제명령과 동일한 범위로 확대하고, 아울러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지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2) 시·도·지·사 또는 그 직원이 하는 조사의 방해 등을 행한 자에 대한 벌칙의 강화 (제12조제1항 관련)

① 개정의 개요

시·도·지·사는 지시 등을 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등에 대해 보고를 시키거나 그 직원에게 당해 사업자 등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제9조의4 제1항). 동 조사에 대해 보고거부, 허위보고, 검사방해 등을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3만 엔에서 50만 엔으로 인상한다.

② 개정의 취지

시·도·지·사 또는 그 직원이 하는 조사의 방해 등을 한 자에 대해서 3만 엔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이 도입된 1972년부터 약 30년이 경과하였다. 현재로서는 3만 엔 이하라는 벌금액의 수준은 조사의 실시를 담보하는 벌금으로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시·도·지·사에 의한 경품표시법의 엄정하고도 적절한 집행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3. 절차규정의 정비

1) 배제명령의 고시절차 폐지(제6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관련)

① 개정의 개요

공정취인위원회가 배제명령을 한 경우에는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대신 배제명령은 공정취인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기재한 배제명령서의 등본을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제6조제2항 관련).

또한 배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절차 개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지만, 고시절차의 폐지에 따라 불복신청이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을 배제명령서의 등본 송달이 있는 날로 한다(제8조제1항 관련).

② 개정의 취지

배제명령의 고시절차는 1962년 경품표시법 제정시부터 규정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부당표시의 사실을 일반소비자에게 주지하여 오인을 배제하는 것과 동 사건의 이해관계인에게 배제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주지하고, 불복신청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배제명령의 고시가 행해지는 날은 고시절차에 일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통상 위반행위자에 대해 배제명령을 행한 날보다 10일에서 2주간 정도 늦어지고, 이에 따라 배제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동 명령이 확정되는 시점도 그 정도 늦어지게 된다.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배제하고 소비자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한다는 경품표시법의 운용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된다. 한편, 공정취인위원회가 배제명령을 한 안건에 대해서는 동 보도발표자료를 공정취인위원회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하며, 이외에 성명발표문(press release)에 따라 TV, 신문 등의 보도를 통해 널리 일반인에게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보면 일반소비자 및 사건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수단으로서 배제명령의 고시절차가 가지는 의의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배제명령의 고시절차를 폐지하고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이하 「독점금지법」이라 한다)의 행정처분(심결, 과징금납부명령)과 동일하게 일정 사항을 기재한 배제명령서의 등본 송달에 의해 하게 되었다.

2) 배제명령에 관한 송달규정의 정비(제6조제3항 관련)

① 개정의 개요

배제명령서의 등본 송달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5의 규정을 중용한다.

② 개정의 취지

독점금지법상의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 출회(出會)송달, 보충송달, 차치(差置)송달, 외국에서의 송달, 공시송달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할 수 있는 것 외에 (독점금지법 제69조의3 및 제69조의4), 송달을 전자적으로 하는 경우의 규정(동 법 제69조의5)도 정비되었다. 배제명령서의 등본 송달에 대해서도 독점금지법상의 서류송달 방법을 이용하게 되었다.

* 본 자료는 월간 「공정취인」 2003년 7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임